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8년	7월	30일	조례 제 987호
개정	2010년	9월	20일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3년	3월	20일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7년	4월	3일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년	2월	9일	조례 제164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에스오에스(SOS)”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공장으로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오산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 내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에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경제문화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문화국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지역경제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0, 2011. 12. 14, 2013. 3. 20, 2017. 4. 3, 2018. 2. 9〉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등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 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0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⑰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 “지역개발국장”을 각각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㉓ 부터 ㉕ 까지 생략

부칙 <2013. 3. 20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⑰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2017. 4. 3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⑭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2018. 2. 9 조례 제164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